

제121조의2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제121조의3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121조의2 · 제121조의3의 요약

- 해외직접투자한 내국법인은 신고기한까지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투자받은 법인의 재무상황, 해외영업소의 설치현황 등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 미제출 및 허위제출시 60일내 보완요구에 따라 제출해야 함(2년 경과시 제외).
 - 보완요구 불응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만, 과태료의 부과대상은 50%이상 자회사를 대상으로 함.
 - * 과태료 부과기준(위반정도에 따라 50%범위에서 경감·가중 가능)

미제출·허위제출	과태료
해외현지법인명세서	300만원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300만원

● 제121조의2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투자 받은 법인의 재무상황,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 등의 명세서(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의 제출

이나 보원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원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제121조의3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원을 요구받은 법인(투자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 징수한다. (2010. 12. 30 개정)

1. 본 조의 개요

해외에 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투자받은 법인의 재무상황,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등의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로 이관하여 해외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 시 해외자회사의 재무상황표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해외자회사의 지분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II.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의무 (법 제121조의2)

1.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금전대여 및 영업소 등의 설치·운영)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투자받은 법인의 재무상황,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등의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금전대여한 내국법인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재무상황표 : 투자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내국법인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투자한 내국법인

관련법령

● 시행령 제164조의2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2010. 2. 18 신설)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중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 따른 투자를 한 내국법인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 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해외현지법인 자료미제출 및 거짓제출시 보완요구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한 경우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법인에 대한 보완요구권은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2년간까지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를 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 불이행에 따른 제재

자료제출·보완요구를 받은 법인(투자받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나 위반정도 등에 따라 50%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가감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164조의4 【과태료의 부과기준】

- ① 법 제121조의3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010. 2. 18 신설)
-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2010. 2. 18 신설)

[별표 2] (2010. 2. 18 신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4조의4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21조의3 제1항	300만원
법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21조의3 제1항	300만원

4.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 불이행 예외사유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자료제출·보완요구를 받은 법인이 화재·재난, 사업의 중대한 위기, 장부·서류가 압류 및 영치된 경우 등으로 자료제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① 시행령 제164조의3 【해외현지법인의 자료제출의무】**

법 제12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10. 2. 18 신설)

1. 화재·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제출이 매우 곤란한 경우
3.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